

日韓双方의 史料에 보이는 接觸의 양상

鶴田 啓 (쓰루타 케이)

序言

한국사에서 조선후기의 사료는 전기보다 월등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일본사자료도 근세(江戸에도시대)에 들어서면 그 이전 시대에 비해 수량이 비약적으로 증대된다. 이 시대의 특징은 하나의 특정한 사건을 복수의 일본사료, 또는 일본사료·조선사료의 양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발표는 몇가지의 사례를 들어 사료의 병용이 유효하다는 점을 밝히고, 동시에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느낀 의문점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万延1年(1860)、四国通商開始의 통보~對馬藩과 幕府·朝鮮~

첫번째 예로는 万延1년에 對馬藩이 조선에 대해 日本과 欧米四개국(通商條約은 네덜란드를 포함해 五개국) 간의 통상개시를 알린 사례이다. 이 사례는 사료의 병용에 의해 사건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예이다.

- ①長崎(나가사키)에서의 對馬藩·幕府(長崎奉行)의 교섭과, 막부내의 評議·伝達에 관해서는 「万延元年正月より十二月迄応接下り物留運上役所」(1)
- ②江戸에서의 교섭에 관해서는 「公義被仰上」(2)과 「江戸藩邸毎日記」「藩庁毎日記」(3)
- ③對馬·朝鮮間往復書契와 朝鮮國內의 처리에 관해서는 「本邦朝鮮往復書」「承政院日記」「朝鮮王朝實錄」「哲宗實錄」「同文彙考」 등의 사료에 의거하고자 한다.

江戸幕府는 安政5年(1858) 6월에서 9월에 걸쳐 미국·네덜란드·러시아·영국·프랑스와 수호통상조약을 맺고, 그 규정에 따라 이듬해 安政6年6月2日(1859年7月1日)부터 神奈川(横浜)·長崎·箱館의 開港場에서 이들 각국과의 자유무역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개항직전인 安政6年4月17日、영국의 군함 악티온호가 對馬淺茅灣에 침입, 尾崎浦에 정박하여 5月8일까지 체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4). 이 사건을 계기로 대마번은 구미열강이 대마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과 방비체제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대마번청(藩庁)은 이 사건에 관하여 4月19日·同24日·5月2日·同9日, 江戸에 서한을 송부했다(5月20日~6月22日, 幕府에 提出됨). 5月11日에는 외국선의 대마도기항금지를 막부에 요청하기 위해 唐坊莊之助를 長崎에, 海津善九郎을 江戸에 각각 파견하였다.

6月16日、對馬藩長崎聞役(5)小田儀兵衛은 長崎奉行岡部駿河守(長常)에게 8개조의 「口上書取」(6)와 「英船·贈物之目錄」을 제출하여, 개항장이 아닌 대마도에는 정박하지 않도록 막부가 약조상대국에게 요청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口上書取」第一条의 「막부는 欧米諸國으로부터 통상을 허가받은

사정이나 취지를 조선에 정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寬永・正保年間に 천주교 국가의 일본입항금지조치가 결정되었을 때에도 조선에 통보한 전례가 있을 뿐 아니라, 대마도에는 조선의 표류민이 끊임없이 체류하고 있으므로 이번과 같이 영국선박이 몇십일간 대마도에 체류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면 조선측 입장에서 좋지 않은 일입니다」(7)라는 부분이 주목된다.

岡部는 長崎出張中인 目付(8)都筑金三郎(峯暉)과 상담하여 老中에게 伺書を 제출했다. 岡部の 伺書에는 「宗氏が신의 말대로, 조선에 외국통상허가에 관해 통보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생각된다. 이 건은 에도에서 宗氏쪽으로 지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나에게도 상황을 전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였다. 한편 対馬藩江戸藩邸에서는 7月28日、江戸家老佐須伊織의 이름으로 外国掛老中間部下総守(詮勝)와 脇坂中務大輔(安宅) 앞으로 伺書가 제출되었다. 그 문면에는 寬永年間に 천주교국가의 일본도래가 금지되어, 寬永16年(1639)・正保1年(1644)에 그 내용을 조선에 통보했던 전례가 설명되어 있었다. 즉 조선에서는 현재까지도 중국・네덜란드이외의 국가는 일본에의 내항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일본의 천주교금지와 쇄국에 관하여 조선에 통보한 일이 있는 이상, 이번의 통교개시와 천주교금지계속에 관해 통보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논리이다. <史料1>

외국선의 대마도來泊에 관해서는 同7月28日付로, 留守居명義의 伺書3通이 間部和 脇坂에 제출되었다(9). 그 내용은 첫째, 「口々難渋」5개조로, 제5조가 「종래 대마번에서는, 조선에서 파견한 역관사(訳官使)나 송환도중의 조선인표류민에게 자유로운 배회를 허가하지 않아 왔는데, 통항허가의 외국인들이 도내를 멋대로 배회하면 조선에 대해 이를 설명하기가 곤란해지므로, 금후 용건없이 대마도에 정박하지 말도록 엄중히 영달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둘째는, 薪水의 代金取扱등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지시를 요청하는 8개조로써, 그중 제3조에서 「외국인이 대마측의 제지를 무시하고 城下에 상륙했을 경우에는 警衛人을 대동시켜, 성곽내의 주거건물이나 조선의 역관사일행이 체류 중인 여관, 조선인표류민이 체류하는 건물근처, 무사의 주택등이 있는 장소에 일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안근처에 한하여 왕래하도록 해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셋째는, 대마도의 말(馬)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면을 막부가 영국인에게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長崎에서의 伺書、에도에서의 伺書, 그리고 8月16日의 독촉書面(「対馬는 먼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탓에 사람들의 성격이 편협하여, 막부가 외국인을 대응하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옛부터 조선인을 상대해 온 형식이 있더라도 현재 외국인들의 행동을 무례하게 여겨 크게 분노하고 있으므로 어떤 이변이 생길지 심히 염려된다」)(10) 이 한결같이 외국선의 대마도來泊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로써 「朝鮮」과의 관계를 지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四国通商開始의 전달문제를 언급한 対馬藩의 목적은, 통상조약발효라는 새로운 상황하에서 대마번이 対朝鮮關係에서 맡아온 종래의 역할을 막부에 재차 강조함으로써, 日朝外交貿易体制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처리할 것을 확인해두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外国船対応을 둘러싼 各伺書에 대해 8月22日、間部の回答(書取)이 전달되었다. 단, 「箱館奉行所応接下り物留帳」에 의하면, 실제로 老中の 지시가 막부내부의 관계자에게 전달된 것은 이보다 훨씬 후의 일이며, 그외에 12月28日 勘定奉行、同29日外国奉行、이듬해 万延元年閏3月17日, 神奈川奉行(外国奉行이兼任)、그리고 同28日에 箱館奉行이 間部の 회답을 확인했음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대마번내부에서도 通商条約文面の 효력과 막부에 대한 요청의 한계를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어서, 11月10日, 家老가 가신들에게 전달한 布達에는 「현재 幕府가 외국인들을 대하는 방식이 항시 통상조약에 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실제로 많은 외국선들이 品川앞바다에 입항하여 멋대로 에도를 활보하고 있고, 그들의 왕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종 막부의 触이나 達이 발령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조약의 文面に 집착하여 무리해서 외국선의 상륙을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온건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11)고 되어 있었다.

한편, 일본의 사국통상개시를 조선에 통보하는 문제에 관해 10月5日, 〈史料2〉의 문서가 대마번에 전달되었다. 留守居명의의 伺書에 대한 지시는 書取(구두언급을 받아쓴 서식)形式이었으나, 伺書가 家老명의의 문서였으므로 회답도 한단계 높은 書付形式이었다. 이로써 막부는 조선에 四国通商開始와 천주교禁止의 繼續을 통보할 것과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마번에 일임할 것을 인정하였다. 〈史料2〉

막부의 회답은 11월에 대마번에 도착된 것으로 보인다. 藩主宗義和은 万延1年4月付로 礼曹参判·礼曹参議·東萊府使·釜山僉使앞으로 일본이 러시아·프랑스·영국·미국과 통상관계를 체결한 사실과 천주교금지는 종래대로 변함없음을 알리는 書契를 작성했다. 이 서계는 徳川家茂의 將軍계승을 통지하기 위해 조선에 파견중이던 関白承襲告慶大差倭(参判使) 平田宮内을 통해 同年8月 朝鮮側에 전달되었다. 書契의 文面은 다음과 같다. 「茲告、魯西亞·仏蘭西·英 利·亞墨利加四国、比年屢航于本邦、切請通商、紕其素情、審其懇款状、有可憐者、柔遠之道亦不可廢、仍各許其請、以応彼望、若夫邪教緊防 嚴飭、何夫待言、今此事由、令不佞告報貴国、是東武之特旨也、兩國交誼久、固非他邦之可比也、第希弥修隣睦、益敦旧盟、幸善」(礼曹参判에의 書契)。(12)

그러면 이 서계를 수령한 조선측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哲宗實錄」卷12、11年8月己巳(8日)条에는 「備辺司啓曰、東萊府使鄭猷教状啓、関白承襲告知差倭言内、魯西亞·仏蘭西·英 利·亞墨利加四国、通貨於弊邦、故以此別具書契·別幅呈納為言、隨事往復、出於交隣間有事相關義也、撰出回答書契、斯速下送、允之」라고 기재되어 있다(13). 「承政院日記」同日条에도 記載가 있으며、8月26日条에는 「(尹秉鼎)又以備辺司言啓曰、即見戶曹所報、則以為魯西亞·仏蘭西·英 利·亞墨利加四国通貨事告知差倭回礼单参価四千兩、趁即区画為辭矣、此是応例也、以嶺南所在信需穀中新米一千三百石区画、待開倉執錢計報之意、行会如何、伝曰、允之」(14)라 하여 義和의 서계가 무사히 수리되어 회답이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회답서계는 往信書契에 조응하는 文面으로 작성되어, 礼曹参判書契

의 경우는 「四国通商事、不害為柔遠道、而至若邪教繁防、貴国自有禁制、似不待加勉也、今此事由之委報、俾出於睦隣之盛誼、感荷極、曷勝言諭」라고 되어 있다(15). 이 書契는 「本邦朝鮮往復書」 「同文彙考」에 수록되어 있다. 단, 回答書契의 날짜는 「同文彙考」가 8月、「本邦朝鮮往復書」가 9月로 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9月로 정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本邦朝鮮往復書」에는 「以上正月十九日開封」라는 注記가 첨부되어 있어, 이듬해 万延2年에 以酌庵輪番僧에 의해 개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조선조정에서는 四国通商開始·천주교禁止繼續통지에 대한 회답서계의 송부가 비교적 간단하게 결정되어 신속히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통신사파견을 둘러싼 교섭이 난항을 거듭했던 점과는 대조적이라 하겠다. 조선의 회답서계는 万延2年(文久1年) 4月5日、일본어역 <史料4> 과 添狀 <史料3> 과 함께 月番의 外国掛老中安藤對馬守(信正)에게 제출되어, 이로써 3년에 걸쳐 진행된 조선에 대한 四国通商開始·천주교禁止繼續의 통보수속은 지장없이 완료되었다.

2. 天明5年(1785)、對馬藩主의 急死事件~釜山에서의 교섭~

두번째 예로는 天明5年에 對馬藩主宗猪三郎(16)가 급사한 사건을 들 수 있다. 7月8日, 對馬藩主宗猪三郎(平義功)가 15세(막부에는 17세로 보고)의 나이로 급사했다. 猪三郎에게는 아직 친자식이 없었고, 安永7年(1778)에 번주의 지위를 계승했을 때에도 대마도에 在国한 채로 가독을 상속할 것과, 성장할 때까지 수년간 대마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특례를 막부로부터 허가받았다. 따라서 급사했을 당시 아직 將軍알현(17)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 대마번에서는 번주가 이처럼 특수한 상황하에서 급사한 사건의 처리를 놓고 필요한 수속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히 사망을 공표한 결과, 藩存亡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18)

그후 막부의 지시에 의해 번주의 사망은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은 처리과정 자체뿐만 아니라 당시 대마도와 에도사이의 연락체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사건이다. 단, 본발표에서는 번주의 사망취소가 조선측에 어떻게 전달되어 처리되었는가 하는 점에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그 교섭 과정에는 대마번과 조선(특히 왜관에 출입하는 訳官)의 교제의 특질이 여실히 나타나있다 하겠다.(18)

釜山倭館에는 館守嶋雄太膳에게 송부된 7月12日付서한을 통해 번주의 사망과 사망의 공표가 전해졌다. 이 서한은 7月23日, 왜관에 도착되어 같은날 그 내용이 왜관내의 藩士들에게 공표되었다. 23日, 入館한 訓導·別差(兩訳)에게도 번주의 사망이 전달되어, 24日, 훈도가 상복을 입고 입관, 通詞가 동석한 자리에서 嶋雄에게 東萊府使·釜山僉使의 弔辭를 전달하였다.

한편 7月29日, 번주급사를 연락받은 에도의 대마번번저에서는 막부관계자와 접촉하여 急養子願(급히 양자상속의 승인을 막부에 요구하는 것)의 수속에 대해 타진했으나, 막부관계자의 한결같은 반응은 “기존의 수속절차를 변경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마번의 실정을 파악한 막각은

정규수속에 집착하는 한 대마번의 존속이 불투명해지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 번주를 바꿔치는 편법(藩主猪三郎은 건재하며, 번주의 동생이 사망한 것으로 하여 금후 번주의 동생이 猪三郎을 대신함)을 취하도록 시사하였다. 대마번의 国元家老衆이 이 방침을 알게 된 것은 8月8日付에도서한이 도착한 8月23日이었다.

8月21日, 조선도해를 명령받은 阿比留惣四郎은 9月9日밤 왜관에 도착했다 (19). 阿比留는 출발전 家老들로부터 ①공식적으로는 번주가 「蘇生」한 것으로 해두고, 대마번의 内情이 「以心伝心」으로 전달되는 것이 가장 「上策」이다 ②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마번으로서는 불가피했음을 주장한다 ③内情을 전부 밝히고 부탁하는 방법은 될 수 있는 한 피한다 ④그러나 번주의 사망을 취소하는 목적을 達成하기 위해서라면 상황에 따라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상관없다, 라는 지시를 받았다. 嶋雄는 즉시 阿比留가 지참한 서한의 내용을 왜관내의 藩士들에게 전달하고, 通詞에게도 서한의 내용을 조선에 전하도록 명했다.

9月10日, 両訳이 입관했다. 대마측의 通詞는 대마번으로부터 번주가 「蘇生」했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으나, 両訳은 이처럼 「어린애 장난」같은 일을 동래부사에게 보고할 수는 없다고 하며 중개를 거절했다. 이를 전해들은 阿比留는 통사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자연스럽게 전하여 조선의 역관이 대마번측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섭을 지시했다. 그 결과 両訳도 「뭔지는 모르겠으나 중대한 속사정이 있는 것 같다」면서 협력해 줄 것을 약속했다. 이 단계에서 両訳은 대마번의 내부 사정을 전부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11日, 嶋雄·阿比留·通詞·両訳이 왜관내에서 회합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嶋雄과 阿比留는 번주의 병이 쾌차되었음을 전했다. 両訳은 「대단히 기쁜 소식이다」라고 대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일을 동래부사에게 보고할 경우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두려워하여, 阿比留가 보기에든 곤혹스러워하는 빛이 역력했다. 阿比留는 이튿날 대마번의 사정에 정통한 역관 韓判官(20)에게 대마번의 내정을 설명해 두었다. 13日, 通詞가 별차로부터 얻어낸 정보에 의하면, 東萊府使에게 보고한 결과 동래부사도 이 일을 조정에 어떻게 보고해야 좋을지 몰라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한다. 阿比留는 9月15日付로 国元家老古川図書에게 서한을 띄어 아직 동래부사의 승락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18日밤 両訳이 동래부사의 면전에 끌려나가 杖罪에 처해졌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20日, 両訳의 서한이 전달되어, 杖罪는 誤報이고 사실은 逼塞(근신) 처분을 받았음이 밝혀졌다. 뒤에서 인용하는 〈史料5〉의 내용으로 미루어, 両訳에 대한 처벌은 조정에 보고하기 전 형식을 갖추기 위해 행해진 조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24日, 両訳이 入館하여, 두사람이 동래부사에게 이번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館守에게 전해주도록 요청했다. 또한 비밀로 해줄 것을 전제로 하여 「府使へも御国之義最眞ニ被存、深ク心を被配、巧者成ル書手を都江被差登、彼是申含、古東萊府使へ便り、朝廷方申込候手配被致候(東萊府使도 대마도번을 중시하여 심히 염려하고 있으며, 말씀씨가 탁월한

자를 한성에 올려보내 전직동래부사에게 부탁하여 조정의 중신들에게 적절히 중재해 주도록 손을 썼다)」고, 동래부사가 이 일을 무사히 수습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阿比留는 10月7日까지 조정의 답서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그간의 경위를 10月7日付서한으로 古川図書에게 알렸다.

10月13日, 兩訛이 入館하여 通詞와 함께 館守에게 나아가 “조정이 번주소생의 건을 납득했다는 연락이 내려와, 이를 館守에게 전하라는 부사의 명을 받고 왔다”고 전했다. 그후 兩訛은 이번 일이 원만하게 처리된 이유로 ①兩訛이 지난번 대마번의 逝去使者와 대면하지 않았다는 점 ②관수가 부사에게 번주의 사망을 비공식적으로 통보했을 뿐, 정식으로 告訃使가 조선에 도래하지는 않았다는 점 ③따라서 부사가 조정에 啓聞은 하였으나 공식적인 수속을 거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조정에서도 알면서 모른척 할 수가 있었던 점 ④府使의 처리대응이 적절했던 점, 등을 열거했다. 阿比留는 14日付로 図書에게 서한을 작성, 이 서한은 10月20日, 對馬府中에 전해졌다.

그러면 동래부사는 이 일을 조정에 어떻게 보고하였고, 조정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9月27日, 동래부사가 조정에 제출한 보고가 〈史料5〉이다. 阿比留惣四郎의 서한이나 「館守日記」에는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史料5〉를 보면 訓導·別差에게도 藩主의 사망과 번주바뀌치기의 내부사정이 전부 알려졌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보고는 대마번에서 온 연락을 동래부사가 직접 중재하는 형식이 아니라, 訓導·別差의 보고를 조정에 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대마번의 내정을 전부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마번의 잘못을 신중히 추궁하면서, 대마측의 “이치에 어긋나는” 발언을 전달한 역관에 대해서는 이미 엄중한 주의를 주었음이 기재되어 있다. 번주「蘇生」(=실제는 번주의 바뀌치기)라는 비정상적인 연락을 접하고서 보고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던 동래부사의 배려를 엿볼 수 있다. 당시의 조선관인이 갖고 있던 對馬島人에 대한 이미지와 동일한 인식, 즉 倭人의 발언은 윤리적으로 사리에 크게 어긋나지만 내부사정상 불가피한 점도 있는 것 같고 대마번 스스로「一心向慕、無異藩臣」이라고까지 언급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미 訓導와 別差를 처벌함으로써 일단 조선측의 체면은 지켜진 셈이었다. 여기에서 만일 조정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서 동래부사를 처벌하거나 하면 조선이 倭人에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倭人을 상대로 더이상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것은 득책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10月4日、國王正祖은 諸臣들에게 「東萊府使狀啓中、對馬島主還生事、卿等果聞之否」라고 하문하였다(20). 領議政徐命善은 「果為得聞、而渠輩之生不生、非我國之所知」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해 국왕이 「狀本中、雖有令廟堂稟處之意、而此則別無稟處委析、只於卿等之私書、以此意令萊伯知悉、無妨矣」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자, 徐命善이 「誠好矣」라고 찬성을 표했다. 동래부사가 한성에 파견한 「말씀씨가 탁월한 자」나 「전직東萊府使」가 배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결과적으로는 동래부사가 바라던대로 조정은 이 건을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다.

결국, 嶋雄나 阿比留는 번의 내정을 스스로 언급하는 일 없이 通詞를 통해 역관에게 전달시킴으로써 대마藩庁의 체면을 지킨 셈이고, 東萊府使李頤祥은 대마번주 「蘇生」이라는 사리에 어긋나는 보고를 訓導·別差의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조정에 대해 체면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을 처리했다 할 수 있다.

3. 小田幾五郎關係史料~通詞와 訳官~

文化년간의 (辛未年) 通信使는 来日이 실현되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교섭이 행해졌다. 韓国史料와 宗家記録을 구사하여 사실의 경위를 상세히 서술한 田保橋潔氏의 「朝鮮国通信使易地行聘考」(21)는 무려 250페이지를 넘는 분량으로, 그외에 長正統氏의 史料紹介「倭学訳官書簡よりみた易地行聘」(22)、三宅英利氏의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23) 등의 연구도 있다.

対馬歴史民俗資料館宗家文庫史料인 「記録類III朝鮮關係」에는 付表에 표시한 것처럼, 「易地聘札」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対馬藩朝鮮語通詞小田幾五郎의 관계사료가 포함되어 있다. 추측컨대 이들 사료는 역지빙례를 추진했던 대마번중신들이 小田을 비롯한 통사들에게 조선역관과의 회화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여 번에 제출시킨 서류이다. 일반적인 변청기록에는 기록되지 않는 구체적인 會話內容까지 서술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작업과정에 기인할 것이다. 기록에 남아있는 부분은 장기간의 교섭과정 중 일부과정에 불과하지만 교섭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사료라 하겠다.

일례를 들면 A16 「乙丑年閏八月掛合」은 文化2年(1805)閏8月, 뇌물수수·書契偽造容疑로 故朴俊漢·崔瓘·崔国禎등이 체포된 일과 관련해, 講定官(講定訳官)·訓導가 일본측의 사정을 듣기 위해 입관했을 때의 기록이고, 講定官·訓導와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사이에서 오간 대화가 기재되어 있다. 対馬側은 ①이 사건과 対馬는 관계없음 ②이미 전달된 書契는 朝鮮国内事情에 관계없이 有効함, 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이 사료에는 대마번측의 역지빙례교섭이 조선의 거부에 부딪혀 일단 좌절된 후, 조건여하에 따라서는 대마측의 상담에 응할 용의가 있음(이는 영의정과 조정의 의향이다)을 朴俊漢이 시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史料6>

또다른 일례로 A15 「寬政十一己未年自正月御用書物扣覚」에 의하면, 그해 前訓導崔瓘(伯国)가 대마번측에 朴俊漢사망후의 활동자금을 보조해 줄 것을 요구해, 역관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小田이 이해를 표명했다고 되어 있다. 또한, A18 「寅十一月十一日·十二月十一日追々口写扣」 A19 「卯九月三日達口上手覚」 A20 「七月廿四日口写」 A21 「丙寅八月十九日口陳并口写(講定官訓導兼而都船主様江御内願申出置候品二付今日府使江往復之口写)」에는 文化3年8월부터 4年7월에 걸친 교섭과정이 나타나 있어, 양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대립했는지를 알 수 있다. <史料7> (=A20의 경우)

그러나 거기에 기재된 대화내용이 현장의 교섭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공의 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는 해도 (25), 대마번통사가 자기들의 입장이 불리해질 내용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대단히 상세한 사료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田保橋氏가 제시했던 문제점

을 전부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속독하면 할 수록 새로운 의문점이 생긴다 하겠다. 예를 들어 〈史料 7〉의 가장 첫부분인 「都便有之候処、府使方へハ委不申来、則子謙方江朝廷方より申来候者」 이하에 인용된 조정의 지시는 과연 사실일까? 만약 사실이라면 역관과 중앙 조정, 또는 역관과 조정의 유력인사와의 연계관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史料 7〉에는 「幾五郎より申見候者(小田幾五郎가 말한 것은)」이라는 표현이 있어, 小田이 주장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으나, 과연 小田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여 그러한 발언을 했을까. 아니면 대마번의 표면적인 입장을 대변한 것일까? 이러한 문제들은 통사와 역관의 상호인식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사료의 검토가 요구되므로, 현재로서는 간단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結言

본발표에서는, 日韓兩國의 史料를 사용함으로써 江戸時代(朝鮮後期)의 対馬・朝鮮關係를 보다 입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사례 몇가지를 들어 보았다. 첫부분에서 발표자는 「江戸時代の 사료는 그 이전 시대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고 언급했다. 日韓關係史史料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 특징으로써 다음의 두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사료의 수가 많으면서 각지에 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인과 조선왕조 사람들의 접촉기회는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잔존하는 관련사료는 외교무역관계의 편찬물뿐만 아니라 幕府・諸藩의 記録, 法令, 農村(漁村, 都市) 史料, 文学作品, 絵画등 각종사료속에 日韓關係에 관련된 기사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26) 사료의 발굴이나 사료집의 간행은 각처에서 행해지고 있고(27)、그것을 이용한 연구도 많이 발표되고 있으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28) 또한 여러가지 사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각각의 사료의 성격(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가, 작성자는 양국관계에 어떤 형식으로 관계하고 있었나, 작성자의 지식, 인식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29)

둘째, 한가지 사료의 분량이 대단히 많다는 점이다. 대마번의 기록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예를 들어 「館守毎日記」(国立国会図書館所蔵)이나 各種「通信使記録」을 전부를 읽으려면 아마 수십년이 소요될 것이다. 「3. 小田幾五郎關係史料」에서 취급한 사료만도 완독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즉 ①膨大한 사료를 대상으로 ②史料의 性格을 확정하면서 ③江戸時代の 日韓關係의 特徴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사료나 기술을 찾아내는 작업이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 註 >

- (1) 市立函館図書館所蔵。以下「箱館奉行所応接下り物留帳」으로 略称
- (2) 対馬歴史民俗資料館宗家文庫史料
- (3) 東京大学史料編纂所宗家史料。
- (4) アクテオン号来航을 둘러싼 事實經過에 대해서는 特記以外、日野清三郎著・長正統編『幕末における対馬と英露』(東京大学出版会、1968年)에 의거
- (5) 長崎奉行과의 連絡을 위해 長崎에 常駐하고 있던 役職。
- (6) 口頭로 언급한 內容을 기록한 간략한 서식의 서류。
- (7) 一、諸蛮之内通商御免ニ相成候次第、公辺より朝鮮国江御主意柄宜御告知ニ不被為及候而者、寛永・正保之度耶蘇宗門之國々入津御停止被仰出候節、彼国江御嚴重被仰達候御訳も有之、国許之儀者不絶彼国之漂人在留罷在候中、如此此節イギリス船数十日滞留候而者、被对彼国ニ御不都合之儀ニ御座候事、
- (8) 幕府役職。役人の 監察을 행함。將軍이나 幕閣의 명령을 받고 特定任務遂行을 위해 지방에 가는 경우도 있음。
- (9) 提出経緯・趣旨에 관해서는 「当夏英吉利国之船御国尾崎浦江来着、多日令滞留候付而者、御心遣者素、御失費茂不輕、且者人民之疲弊等、旁御難涉無限候ニ付、何篇此後何之用向茂無之異国船来着不致様、公辺より耽与御差止被下成方御願立被成度、且又右被仰立之通、重而来泊方御差止相成候時、当節之英吉利船之儀者滿州江相越、九十月ニ相掛又々御国江寄船可致、其節馬所望之儀申聞居(中略)相尽方委曲筆頭添役席案書役海津善九郎江申含来候ニ付、左之三通書面取調、筋々御内意相尽候上」라고 되어 있다。
- (10) (国許は) 遠国偏屈之人情、公辺ニおみて異国人御接応之御趣意柄も弁兼候上、国許之儀者旧来朝鮮人取扱之形茂御座候付、当時異人共之振合失礼至極与相心得兎角憤怒強、如何なる異變可相生哉与心配苦念無限次第御座候、
- (11) 全体之駆引者五国御条約之御趣意ニ原万端令所置、尤御達面之内条約を押し立成丈上陸杯差留候様ニ与有之候得者、可成丈者相制候者勿論ニ候得共、公辺ニをみて当時異人共御取扱之現体者、每事御条約之振合共不相關、異国船多分者品川沖江乗入、江戸中勝手ニ致遊歩、右往来ニ少も異儀無之様、每度御触達茂有之候を以者、強而御条約之面ニ泥、無理ニ上陸を拒候儀者有之間敷事候間、時宜ニ随、穩便之所置肝要之事候、
- (12) 茲に告ぐ、魯西亞・仏蘭西・英 利・亞墨利加四国、比年屢ば本邦に航し、切に通商を請ふ。その素情を糺し、その懇款の状を審にするに、憐れむべきものあり。柔遠の道また廢すべからず、仍て各その請ふを許し、以て彼望に应ず。夫れ邪教緊防嚴飭の若きは、何ぞ夫れ言を待たんや。今この事由、不佞をして貴國に告報せしむ。これ東武の特旨なり。兩國交誼の久しきは、固より他邦の比すべきにあらざるなり。只だ希はくば、弥よ隣睦を修め、益す旧盟を敦くせば、幸善たり。
- (13) 備邊司啓して曰く、「東萊府使鄭獻教狀啓す。閔白承襲告知差倭の言内に、魯西亞・仏蘭西・英 利・亞墨利加四国、弊邦に通貨す。故に此の別具書契・別幅を呈納するを以て言となすと。事に随ひ往復するは、交隣の間有事相聞こ

ゆるの義に出るなり。回答の書契を撰出し、斯速下送せん」と。(国王)これを允す。

(14) (尹秉鼎) また備辺司の言を以て啓して曰く、即ち「戸曹の報ずるところを見るに、則ち『魯西亜・仏蘭西・英 利・亜墨利加四国通貨のこと告知差倭の回礼単参価四千兩、趁即区画し辞をなせり』と。これはこれ例に応ずるなり。嶺南(慶尚道・全羅道)所在の新需穀中新米一千三百石を区画し、開倉を待ちて錢を執りこれに報ゆるを計るはいかん」と。伝して曰く、(国王これを)允すと。

(15) 四国通商の事、柔遠の道たるを害さず。而して邪教繫防の如きに至りては、貴国自ら禁制あり、勉を加ふるを待たざるに似たるなり。今この事由の委報、俛く睦隣の盛誼に出、感荷の極、言諭に勝へず。

(16) 宗義功(1) (1771~85) 은 宗義暢四男(兄3人は 早世)、法名高源院。宗義功(2) (1773~1813) 은 宗義暢六男、初名富寿、法名浄元院。

(17) 大名이 江戸城에서 將軍과 대면하는 儀式。이 경우는 大名後繼者が 將軍과 대면하여 그 지위를 확인받는 것을 가리킴。

(18) 이 一件의 주된 사료는 다음과 같다.

「義功様七月八日御逝去之处御跡目御大切之筋 御権門家より御密旨を以御再生ニ奉取計候始終御内密記録 右ニ付以酌庵長老江御頼之掛合共ニ」(対馬歴史民俗資料館宗家文庫史料、記録類表書札方S(3)79)。以下「内密記録」으로 略記。

「義功様七月八日御逝去之处御跡目御大切之筋御権門家より御密旨を以御再生ニ奉取計候始終御内密記録ニ属候江戸其外諸方往復書状案控」(同、S(2)186)

「義功様七月八日御逝去之处御跡目御大切之筋御権門家より御密旨を以御再生ニ奉取計候始終御内密記録ニ属候江戸其外諸方往復書状」(同、S(2)187)。以下「往復書状」。

「高源院様御逝去記録」乾・坤(同、S(3)77・78)。以下「逝去記録」。

「御内用殿様御病氣一件往復書状」上・中・下(東京大学史料編纂所宗家史料、宗家3-233~235)

「御内用殿様御病氣一件書状扣」乾・坤(同、宗家3-236・237)

원래는 본문기술의 전거사료명과 이용부분을 개별적으로 주기해야 하나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19) 以下倭館内の 움직임은 「館守毎日記 天明五年九月十月」(国立国会図書館宗家文書。823-8-52)、註(18)의 「往復書状」、同「御内用殿様御病氣一件往復書状」에 의거함。

(20) 字는 士敏、名은 廷修。判官은 各官庁從四品の 役人을 칭함。

(21) 「承政院日記」正祖九年(乾隆五十年)十月初四日条。

(22) 『東洋學報』23-3・4、24-2・3。1937~38年。『近代日鮮關係の研究・下』(1940)에 所収。

(23) 『史淵』115、1978年。

(24) 文献出版、1986年。특히 第5章「幕藩体制動搖期の通信使」。

(25) 그러한 文書를 작성하는 것은 事實經過를 기록하기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다

(26) 通信使來日(訪日)를 예로 들면, ①對馬藩「通信使記錄」、②幕府法令、③幕府의 命令을 받은 諸藩의 法令이나 記錄、④動員된 沿道村落의 史料、⑤筆談·唱和에 參加한 文化人의 關連史料、⑥傳聞記錄、⑦文学作品 등이 있다.

(27) 史料發掘은 各地教育委員會(都道府縣、市町村)、縣史(市史、町史) 編纂室、大學、研究者、「郷土史家」 등이 행하고 있다. 史料集刊行은 地方公共團體出版物(『縣史』、『市史』、『町史』など)、研究機關刊行物、民間出版社의 出版物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8) 물론 방대하기는 하나 연구주제에 따라서는 關連史料가 충분치 않은 경우도 있다.

(29) 當時兩國關係에 관련했던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그들의 지식이나 인식이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對馬藩·幕府를 예로 들면 倭館通詞-倭館館守-對馬藩庁-江戸藩邸-江戸幕府、朝鮮王朝를 예로 들면 訳官(특히 別差·訓導)-東萊府使-備邊司/禮曹-朝廷重臣、등 여러 단계가 존재했다.